

의안번호	제 62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10월 일 (제335회)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양섭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4년 10월 6일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양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2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10월 일

발 의 자 : 이양섭·김학철·김인수·박우양·

이의영·황규철·김봉희 의원(7명)

1. 제안 이유

- 도내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, 운용중인 조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개정 내용 중 ‘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’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 20호) 및 지원대상 추가(안 제27조)

나. 모호한 조문 정비

- 투자유치위원회 설치(안 제3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 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“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”이란 남한주민이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(지사·영업소·사무소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국내·외 기업 등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, 비수도권 신·증설 기업,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(이하 “지원기준”이라 한다)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(생 략)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19. (생 략)	1. ~ 19. (현행과 같음)
(신 설)	20. “ <u>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</u> ”이란 <u>남한주민이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(지사·영업소·사무소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u>
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국내·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	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국내·외 기업 등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<u>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</u>

현행	개정안
제4조 ~ 제26조(생략) 제27조(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) ①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·증설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(이하 “지원기준”이라 한다)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 ~ 제26조(현행과 같음) 제27조(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) ①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, 비수도권 신·증설 기업,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(이하 “지원기준”이라 한다)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
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, 제2014-25호)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 ~ 3 (생 략)

4. “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”이라 함은 남한주민이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(지사·영업소·사무소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.

1. 국내 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해당하고,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할 것
2. 보조금 신청시 개성공업지구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
3.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